



##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

[2017년 6월 이사회에 의해 개정, 결의사항 C-1]

### 제 1 조 — 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_\_\_\_\_ 로타랙트클럽이라 한다.

이 단체는 \_\_\_\_\_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한다.

### 제2조 — 목적

본 로타랙트클럽의 목적은:

청소년 및 젊은 직장인들이 국내외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전문 개발을 통해 리더십 기술을 함양하며, 로타리 봉사의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와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글로벌 비전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에 로타리 회원들이 적극적, 개인적으로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로타리 제 5 대 봉사 부문인 청소년봉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국내 및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지속성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및 국제 봉사에 나서도록 하며, 전문 네트워크의 확장, 리더들과의 아이디어 교환, 세계 전역에 걸친 평생 우정 개발을 위해 로타리의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지역사회 리더 및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국내외에서 친구를 사귀고, '초아의 봉사'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재미있는 클럽 활동을 하게 하는 데 있다.

### 제3조 — 스폰서십

1. 본 로타랙트클럽의 스폰서 로타리클럽은 로타리안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로타랙트클럽에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 위원 수는 클럽이 결정한다.

2. 본 로타랙트클럽은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일부가 아니며, 이 클럽과 클럽 회원은 스폰서 클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특전도 갖지 아니한다.
3. 본 로타랙트클럽은 비정치 단체이고 비종교 단체이다.
4. 본 로타랙트클럽은 대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결성될 수 있다. 대학을 기반으로 할 경우, 스폰서 로타리클럽은 로타랙트클럽이 모든 학생단체 및 과외활동을 규제하는 대학 당국의 규정과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로타랙트클럽에 대한 감독과 조언을 할 때에 대학 당국과 협조한다.
5. RI 로부터의 인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 로타랙트클럽의 회장은 클럽과 회원 정보를 매년 6 월 30 일까지 RI 에 보고한다. 클럽과 회원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2 년에 걸쳐 제공하지 않는 클럽의 자격은 종결된다.
6. 본 로타랙트클럽의 존속 여부는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인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자격이 종결되는 경우 지구총재는 다른 스폰서 로타리클럽을 주선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대체 스폰서 로타리클럽이 확보되어 RI에 보고되지 않을 경우 로타랙트클럽의 자격도 종결된다.

\*본 정관에서의 “대학”이라는 용어는 모든 고등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 제4조 — 멤버십

1. 본 로타랙트클럽의 회원은 선량한 성품과 리더십 자질을 지닌 18세에서 30세의 학생과 젊은 직장인으로 구성된다.
2. 본 로타랙트클럽의 회원 가입 방법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본 클럽이 스폰서 로타리클럽과의 상의하에 결정한다. 대학을 기반으로 한 로타랙트클럽의 회원 가입 방법은 대학 당국의 승인을 요한다.
3. 회원 자격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가)로타랙트 연도 마지막 날 인 6월 30일에 회원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단, 대학 당국이 정한 규정과 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나) 클럽의 자격이 종결되었을 때, (다)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클럽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외에 출석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클럽은 클럽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체 회원의 2/3 이상의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5조 — 모임

1. 클럽은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2. 직접 모임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또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연결에 통해 참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3. 이사회는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4. 클럽 모임 및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취소될 수 있다.

## 제6조 —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위원회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클럽 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의 임무는 임명 시 명시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임무를 완수했거나 임명한 회장에 의하여 해임될 때에 해산된다.

## 제7조 — 임원 및 이사

1. 클럽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세칙에 명시된 추가 임원이 클럽의 임원이 된다.
2. 클럽의 통치 기구는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된 회장, 직전 회장(해당되는 경우),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클럽이 결정한 수의 추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다. 이사회와 클럽의 모든 결정과 정책, 조치는 본 정관과 국제로타리가 정한 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클럽이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클럽인 경우 해당 대학 당국이 정한 모든 학생단체 및 과외활동을 규제하는 규정과 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직책도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모든 임원의 결정이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탄원을 접수한다.

3. 임원과 이사의 선출은 세칙 조항에 따라 지역 관습과 절차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매년 실시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한 자격 있는 회원의 단순 과반수보다 더 엄격한 선출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세칙에 특별히 그 미만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년이다.

4. 로타랙트클럽의 모든 차기 임원, 이사, 위원장들은 지구 로타랙트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도자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 — 활동과 프로젝트

1. 본 클럽은 클럽 활동의 계획, 조직, 기금 조달 및 수행의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 다른 단체와 협력하에 실시되는 공동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협력하는 단체와 공동으로 진다.
2. 본 클럽은 매년 적어도 2개의 주요 봉사 프로젝트를 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이어야 하며, 각 프로젝트에는 클럽 회원의 절대 다수가 참여해야 한다.
3. 본 클럽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본 클럽은 로타리클럽 또는 다른 로타랙트클럽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거나 수락할 수 없다. 단, 간헐적 지원이나 부수적인 경비 지원 수준까지는 허용된다. 스폰서 로타리클럽은 본 클럽과의 상호 동의하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한 모든 기금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회비

1. 모든 스폰서 로타리클럽은 신생 로타랙트클럽 또는 자격이 회복된 로타랙트클럽에 대해 RI 이사회가 정한 로타랙트클럽 가입비를 국제로타리에 지불해야 한다.
2. 클럽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클럽은 클럽 회원에게 입회비나 연회비 또는 분담액을 부과할 수 있다. 클럽이 실시하는 활동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그러한 입회비나 연회비 또는 분담액과는 별도로 조달되어야 하며, 별개의 계좌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클럽의 재정 거래 내역은 1년에 한 번 전문인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3. 로타랙트클럽은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한 기금을 포함해 모든 클럽 기금이 국가의 재정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로타랙트클럽이 해산되거나 자격이 종결될 경우 잔여 기금의 처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제10조 —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클럽 회원이 클럽에의 가입을 수락하는 것은 위 ‘목적’ 항에 기술되어 있는 로타랙트의 원칙에 동의하고, 본 클럽의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이 부여된다. 어떠한 회원도 정관과 세칙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관 및 세칙의 준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 제11조 — 세칙

본 클럽은 본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클럽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클럽 세칙을 채택해야 한다. 단, 이러한 개정 사항은 ‘권장 로타랙트클럽 세칙’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 제12조 — 명칭 및 로고

로타랙트 명칭과 로고는 로타랙트클럽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 있는 동안 품위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로타랙트 명칭과 로고를 착용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이 자격은 회원의 탈퇴 또는 클럽의 자격 종결 시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제13조 — 존속 기간

본 클럽은 정관 규정과 국제로타리가 정한 로타랙트에 관한 방침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는 한 존속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종료된다:

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동의, 승인, 또는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로타리에 의해 자격이 종결될 때:

- 1) 정관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았을 경우
- 2) RI 이사, 로타리재단 이사, 로타리 임원 그리고 직원을 포함해 로타리 지구, 국제로타리 또는 로타리재단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 유지하는 회원이 클럽 회원으로 영입, 유지할 경우
- 3) 기타 사유

나) 스폰서 로타리클럽에 의해 자격이 종결될 때

다) 클럽 자체의 결정이나 조치에 의하여 해산될 때

클럽의 해산과 동시에 클럽 및 회원은 개별적으로든 단체로든 모든 로타랙트 명칭과 로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특전을 상실한다.

#### 제14조 — 개정

본 정관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또한 본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에 대한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모든 개정 사항은 자동적으로 각 로타랙트클럽에 의해 채택된다.

[끝]